

투자위험등급 : 2 등급
[높은 위험]

KTB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4년 1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2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i-ktb.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3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27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1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헤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TB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79225)								
종류(클래스)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9226	79227	95161	95183	95185	95188	79228	A1380	AP79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TB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79225)								
종류(클래스)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9226	79227	95161	95183	95185	95188	79228	A1380	AP79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08.03.05	최초설정
2009.05.01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등의 변경 · KTB액티브자산배분형주식혼합투자신탁 -> KTB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010.05.03	판매회사보수 인하
2010.11.15	CDSC적용에 따른 클래스 신설(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및 판매회사보수 정율식 인하
2011.03.03	종류 CW 신설
2011.03.30	종류 CW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2014.02.28	종류 S 신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 빌딩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14.01.31현재)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기호진	42세	주식운용팀 본부장	35개	4,541억	- '06.01~'10.04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10.05~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이규현	31세	대리	32개	5,258억	- '08.07~'09.07 HMC 투자증권 채권운용팀 - '09.07~현재 KTB 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기호진(10개 / 3,106억원), 이규현(해당사항 없음)]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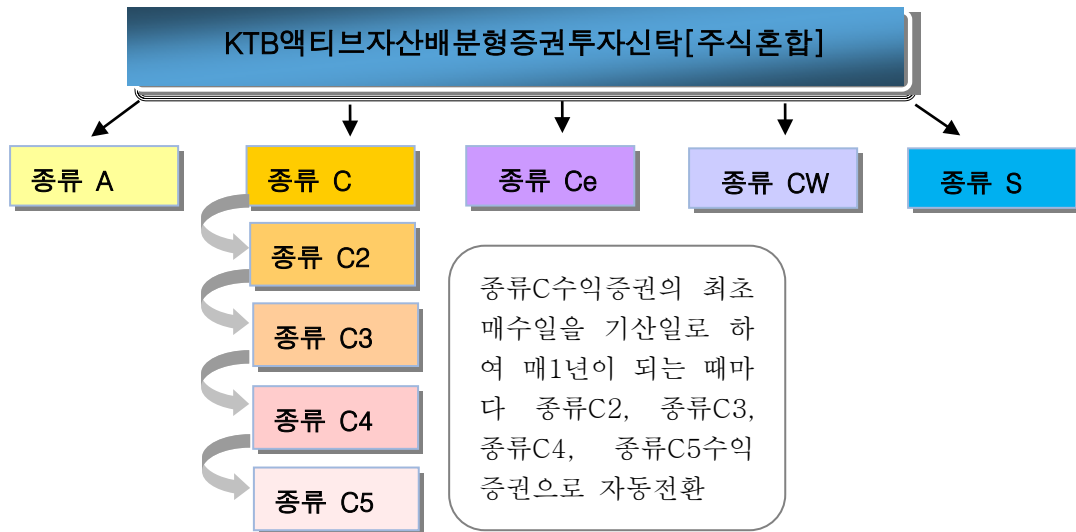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김정희	채권부문	2008년 3월 5일 ~ 2013년 10월 14일
안영희	주식부문	2008년 3월 5일 ~ 2013년 10월 14일
곽재우		2013년 10월 15일 ~ 2014년 2월 27일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 없음
종류 C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4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5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4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 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종류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해당사항 없음							종류S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보수합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종류A	0.55	0.55	0.03	0.017	1.147	
종류C		1.50			2.097	
종류C2		1.35			1.947	
종류C3		1.20			1.797	
종류C4		1.05			1.647	
종류C5		0.90			1.497	
종류Ce		최초설정일~2010.11.14			1.35	1.947
		2010.11.15~2011.11.14			1.213	1.81
		2011.11.15~2012.11.14			1.075	1.672
		2012.11.15~2013.11.14			0.938	1.535
		2013.11.15~신탁계약해지			0.80	1.397
종류CW		0.00			0.597	
종류S		0.35			0.947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이하를 시장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주식	100% 이하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증권의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
② 채권	10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2 -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등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5% 이하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⑥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파생상품	10% 이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⑧	증권 대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⑨	증권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등,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①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① 내지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자세한 투자대상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	----------	------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②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u>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u>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p>(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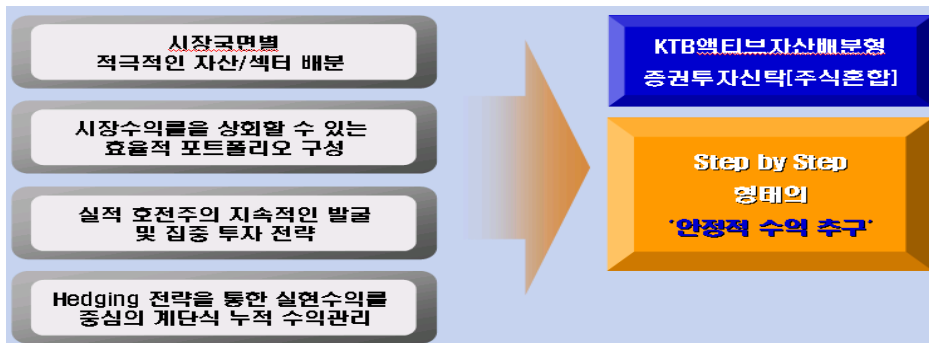
		<p>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⑦	계열회사 지분증권	<p>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⑧	후순위채권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투자한도 초과	<p>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투자대상’ ⑤ 내지 ⑨, ‘나.투자제한’ ② 내지 ⑤, ⑥의 다, 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 월간은 ‘가.투자대상’ ⑦, ‘나. 투자제한’ ②, ④ 및 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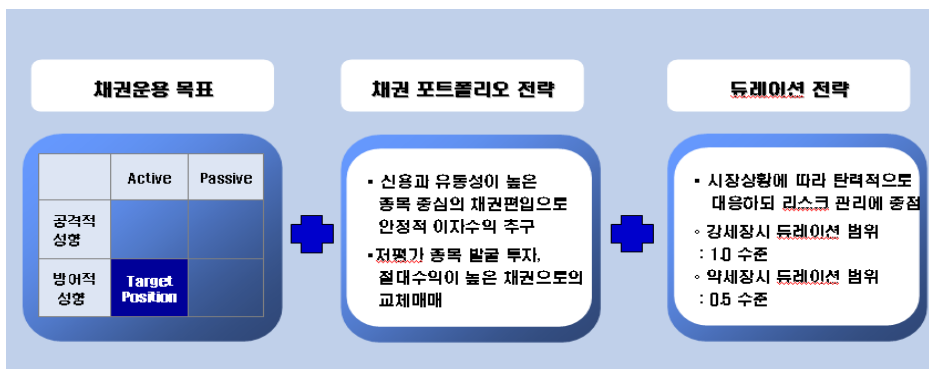
가. 투자전략

- (1)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투자비중 조절을 통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현수익을 중심의 계단식으로 누적수익률을 관리하는 등 주식시장의 장세 변동에 따라 적극적 자산배분 및 전략적 Sector/종목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 Hedging 전략 : KOSPI 선물을 이용하여 시장이 급락할 경우 Portfolio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할 계획임

- (2) 채권운용은 방어적 성향의 액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며,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듀레이션은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3)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장세 변동에 따라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등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 비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나. 위험 관리

- (1) CIO 및 전략리서치팀의 경기분석과 시장전망 등에 기초한 Top-Down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2) 펀드매니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Sector Manager(업종별 관리자)제도를 통한 주간 단위 탄력적 모델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단기 시장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Top-Down 분석은 상위의 개념인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하부의 개념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가는 방식으로 거시경제 분석을 통한 경기전망과 산업분석으로 투자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선정하고 그 섹터 내에서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는 분석방법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KOSPI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주식편입비 조절을 통한 Step by Step 형태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과 그 밖에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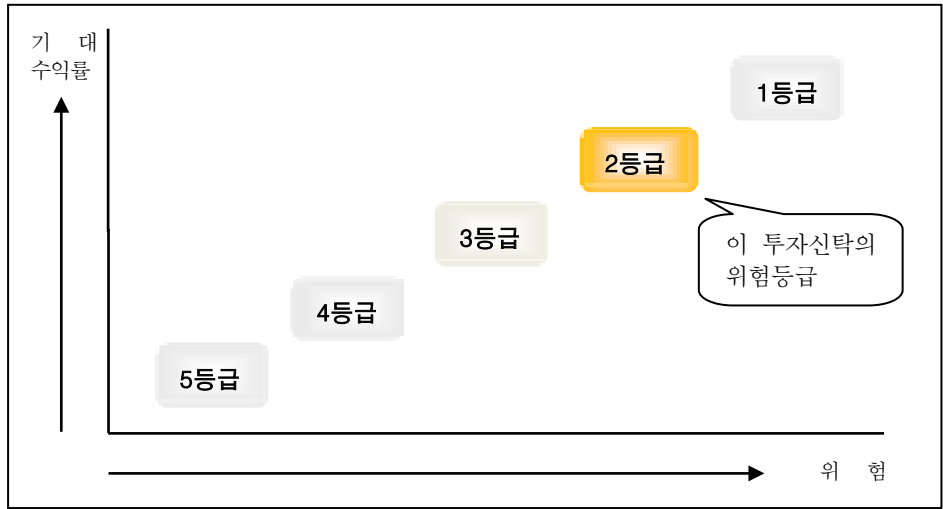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헤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등에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라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KTB자산운용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헤지목적거래인 경우와 투기목적거래가 자산총액의 1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상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의 전혀 없는 부동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의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30%~60%를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부적격회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미만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의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적격채권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헤지목적거래인 경우, 차익거래인 경우 및 투기목적거래가 자산총액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10% 미만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적격채권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원금보존 ELS 포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원금보전형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유동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 등) -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

주) 위의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KT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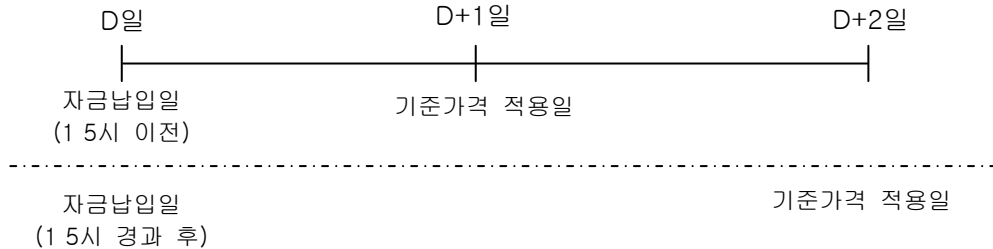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펀드코드	가입자격
종류 A	79226	가입제한 없음
종류 C	79227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95161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3	9518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4	95185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5	95188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4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e	79228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W	A1380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종류 S	AP794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나)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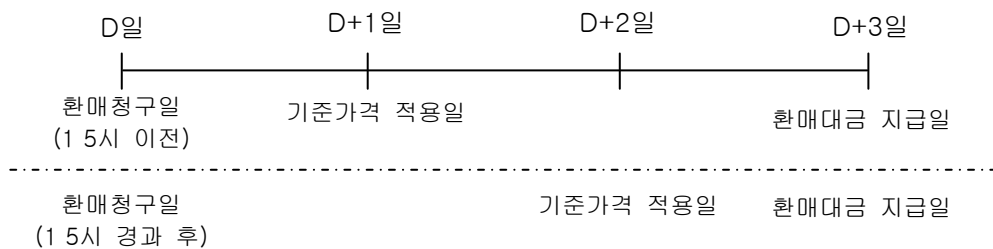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나) 1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잘못된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환매청구에 따라 보유 증권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수익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정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종류S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1. 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5시[오후 3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①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4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5 수익증권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대금 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 ⑤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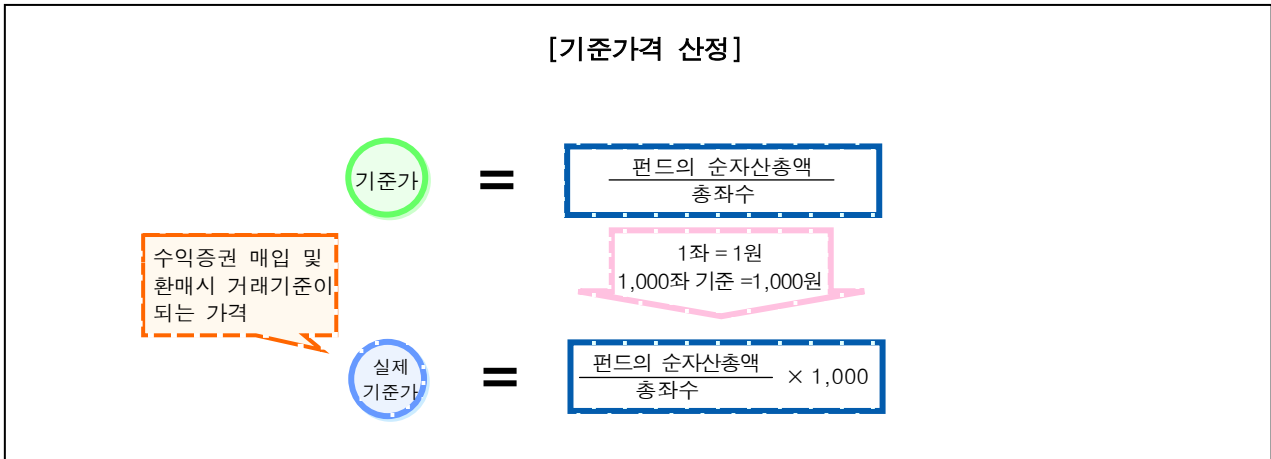
* 2010년 11월 15일 기존 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의 전환은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방법에 따라 전환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과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 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주) 1. 환매수수료 부과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시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를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5.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증권 거래비용	
종류A	0.55	0.55	0.03	0.017	0.005	1.152	0.913	
종류C		1.50			0.005	2.102	0.913	
종류C2		1.35			0.005	1.952	0.913	
종류C3		1.20			0.005	1.802	0.913	
종류C4		1.05			0.005	1.652	0.913	
종류C5		0.90			0.005	1.502	0.913	
종류 Ce		최초설정일~2010.11.14			1.35	0.005	1.952	0.913
		2010.11.15~2011.11.14			1.213			
		2011.11.15~2012.11.14			1.075			
		2012.11.15~2013.11.14			0.938			
		2013.11.15~신탁계약해지			0.80			
종류 CW	0.00	0.005	0.602	0.913				
종류 S	0.35	0.005	0.952	0.913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	---------	--------	--------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종류C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216,243	462,242	727,424	1,483,448
종류 C	213,245	611,117	967,390	1,923,631
종류 Ce	156,664	457,184	779,562	1,690,765
종류 CW	61,526	192,789	335,815	751,395
종류 S	97,128	303,282	526,381	1,166,832

-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C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자동전환됨에 따라 수익자가 종류C 수익증권을 4년 이상 보유한것으로 가정하여 각 구간별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종류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종류 Ce 는 '13.11.15일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판매회사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5.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종류 S 는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에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5기, 제4기 및 제3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5기 (2013.03.04)	제4기 (2012.03.04)	제3기 (2011.03.04)
운용자산	63,117	107,930	89,036
증 권	51,020	85,697	66,836
파생상품	-	-	-
부동산/실물자산	-	-	-
현금및예치금	90	9,613	17,300
기타운용자산	12,007	12,620	4,899
기타자산	6,688	699	4,619
자산총계	69,805	108,629	93,655
운용부채	-	-	-
기타부채	4,212	10,234	29,117
부채총계	4,212	10,234	29,117
원 본	65,595	98,395	64,538
이익잉여금	-2	-	-
자본총계	65,593	98,395	64,538

손익계산서			
항 목	제5기 (2012.03.05~2013.03.04)	제4기 (2011.03.05~2012.03.04)	제3기 (2010.03.05~2011.03.04)
운용수익	1,542	504	20,422
이자수익	1,019	1,218	552
배당수익	535	518	725
매매/평가이익(손)	-16	-1,261	19,118
기타수익	4	29	26
운용비용	1,263	1,592	1,310
관련회사보수	1,254	1,583	1,302
매매수수료	5	4	3
기타비용	5	5	4
당기순이익	278	-1,088	19,112
매매회전율	1,028.32	1,532.31	955.59

주)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종류A	2011/03/05~2012/03/04	356	449	448	463	291	298	513	523
	2012/03/05~2013/03/04	513	523	93	91	229	228	376	379
	2013/03/05~2013/09/30	376	379	30	29	101	100	305	311
종류C	2011/03/05~2012/03/04	88	110	286	298	171	170	203	205
	2012/03/05~2013/03/04	203	205	22	21	216	211	8	8
	2013/03/05~2013/09/30	8	8	3	3	10	9	2	2
종류C2	2011/03/05~2012/03/04	163	203	173	173	250	249	86	87
	2012/03/05~2013/03/04	86	87	198	193	215	213	69	69
	2013/03/05~2013/09/30	69	69	8	8	64	63	13	13
종류C3	2011/03/05~2012/03/04	27	33	158	156	54	56	130	131
	2012/03/05~2013/03/04	130	131	90	88	152	149	68	68
	2013/03/05~2013/09/30	68	68	61	60	44	43	85	86
종류C4	2011/03/14~2012/03/04	0	0	29	31	4	4	25	26
	2012/03/05~2013/03/04	25	26	116	114	44	43	97	98
	2013/03/05~2013/09/30	97	98	32	31	57	56	72	74
종류C5	2012/03/13~2013/03/04	0	0	24	23	6	6	17	17
	2013/03/05~2013/09/30	17	17	29	29	8	9	38	39
종류CW	2011/03/08~2012/03/04	2	3	72	77	71	69	3	4
	2012/03/05~2013/03/04	3	4	0	0	3	3	1	1
	2013/03/05~2013/09/30	1	1	0	0	1	0	0	0
종류Ce	2011/03/05~2012/03/04	13	16	25	26	14	14	24	25
	2012/03/05~2013/03/04	24	25	7	7	13	13	19	19
	2013/03/05~2013/09/30	19	19	2	2	8	8	14	14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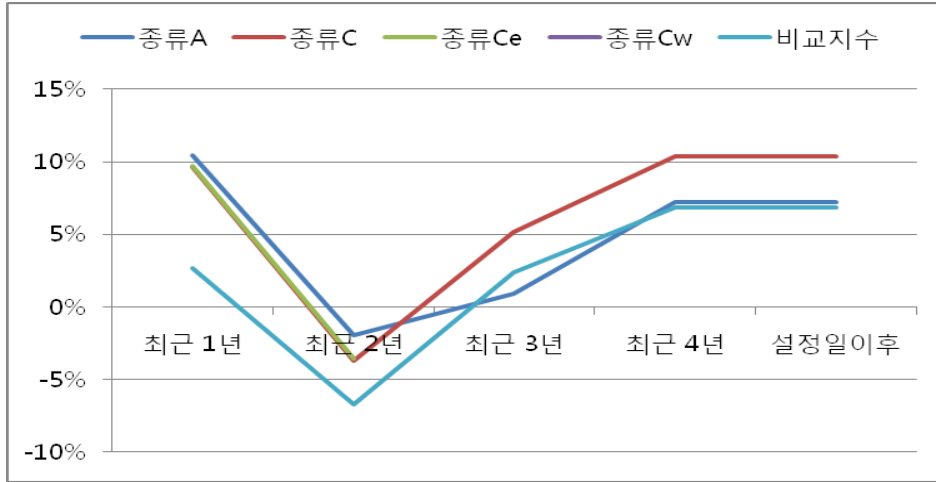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차 (12.10.01~ 13.09.30)	최근 2년 (11.10.01~ 13.09.30)	최근 3년 (10.10.01~ 13.09.30)	최근 4년 (09.10.01~ 13.09.30)	설정일 이후
종류 A	1.96%	4.45%	4.90%	6.95%	10.18%
종류 C	1.01%	3.47%	3.91%	5.94%	9.20%
종류 Ce	1.55%	3.96%	4.33%	6.30%	9.51%

종류 Cw	2.52%	-	-	-	2.34%
비교지수	0.93%	4.89%	2.65%	4.13%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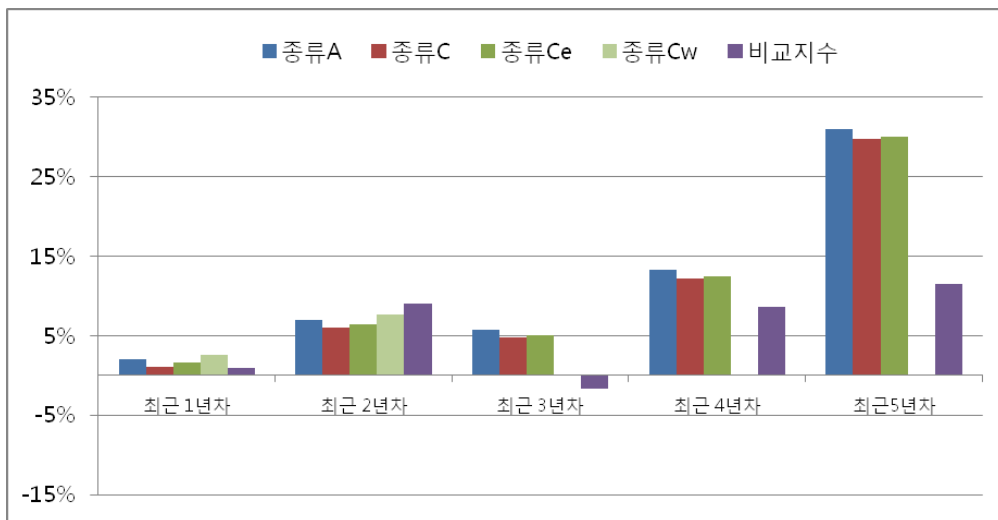
- 주) 1. 비교지수 : '09.04.30 이전(한국종합주가지수 * 7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30%), '09.05.01 이후(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 간	최근 1년차 (12.10.01~ 13.09.30)	최근 2년차 (11.10.01~ 12.09.30)	최근 3년차 (10.10.01~ 11.09.30)	최근 4년차 (09.10.01~ 10.09.30)	최근 5년차 (08.10.01~ 09.09.30)
종류 A	1.96%	7.01%	5.78%	13.35%	31.06%
종류 C	1.01%	6%	4.79%	12.25%	29.79%
종류 Ce	1.55%	6.43%	5.07%	12.45%	30.04%
종류 Cw	2.52%	7.61%	-	-	-
비교지수	0.93%	9%	-1.67%	8.68%	11.48%

- 주) 1. 비교지수 : '09.04.30 이전(한국종합주가지수 * 7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30%), '09.05.01 이후(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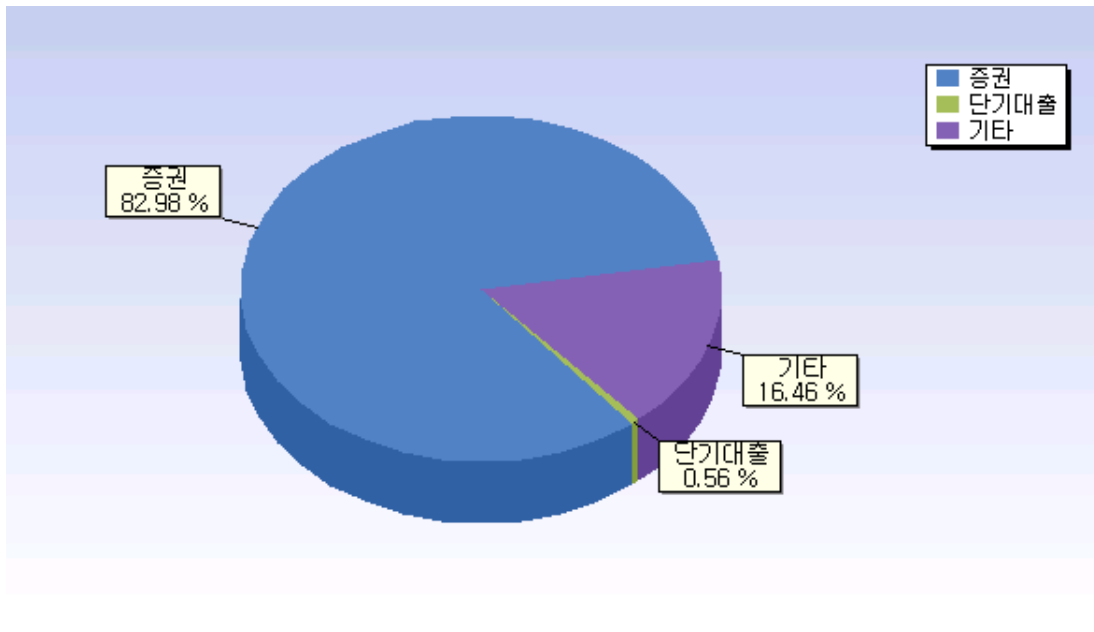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2013.09.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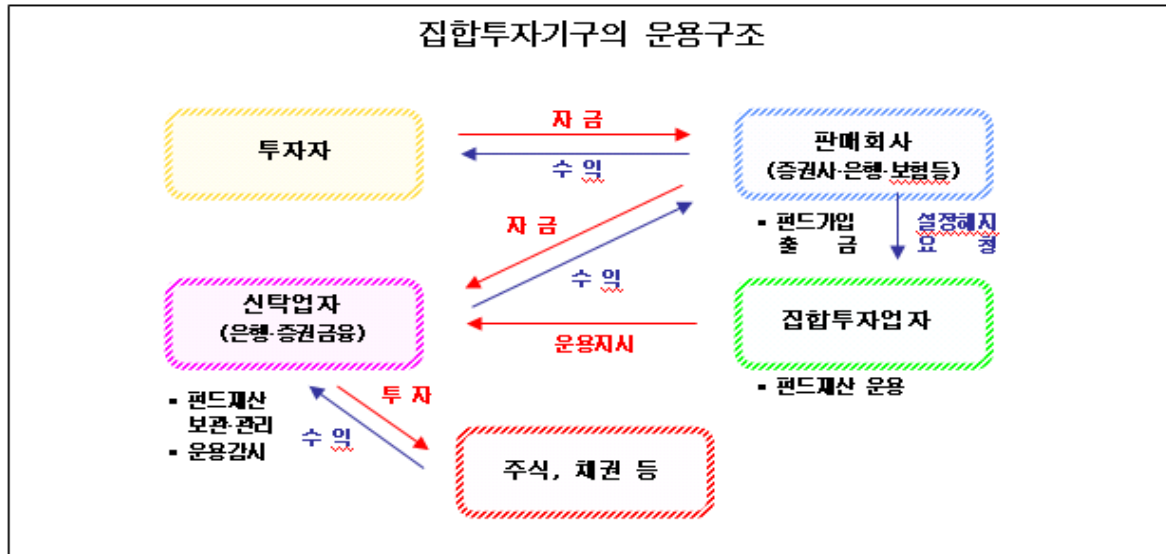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 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 금	기타	자산 총 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402	68	-	-	-	-	-	-	-	3	93	566
비중	(71.06)	(11.92)	-	-	-	-	-	-	-	(0.56)	(16.46)	(100)
합계	402	68	-	-	-	-	-	-	-	3	93	566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연락처 : 02-788-8400, www.i-ktb.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자본금	166.2 억원
주요주주현황	KTB 투자증권(주)(92.38%)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3.04.01 ~'13.12.31	'12.04.01 ~'13.3.31	계정과목	'13.04.01 ~'13.12.31	'12.04.01 ~'13.3.31
유동자산	41,943	37,916	영업수익	11,818	17,705
고정자산	8,270	6,875	영업비용	14,046	14,377
자산총계	50,213	44,791	영업이익	-2,228	3,328
유동부채	1,451	994	영업외수익	226	139
고정부채	1,390	0	영업외비용	4,011	570
부채총계	2,841	994	경상이익	-6,012	2,897
자본금	21,620	16,620	특별이익	-	-
잉여금	25,562	26,987	특별손실	-	-
자본조정	190	190	세전순이익	-6,012	2,897
자본총계	47,372	43,797	당기순이익	-4,751	2,132

라. 운용자산 규모

(2013.12.31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기 타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18,313	8,183	20,203	8,740	2,407	8,891	2,383	2,647	1,153	72,920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의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729-0414)
홈페이지 주소	www.keb.co.kr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상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9층 (☎02-6714-4615)
홈페이지 주소	www.keb.co.kr
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펀드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번지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번지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번지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fr.co.kr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 2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는 관련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KTB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i-ktb.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ktb.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 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프로그램 보유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치,시황,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영지원부서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